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정지영
전화 032-860-4340

보도자료
2025. 1. 22.(수)

국제 마약 조직의 코카인 약 61kg 제조 사건 수사 결과 - 국내 코카인 유통 범죄 적발 중 최대 규모 -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제11조 제1항)
-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산하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코카인 약 60kg 소지 사건을 송치받아 중부지방해경, 국정원 등과 공조 수사한 결과

- ① 과거 호주에 장기 체류하였던 내국인 2명이 '20. 7. ~ '21. 5.경 콜롬비아에서 건축용 벽토 약 80톤을 수입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대량의 액상 코카인을 부산항으로 밀수입**한 다음 이를 호주로 재수출하다가 '24. 6.경 그 중 일부를 강원 횡성군 소재 창고로 운반하고,
- ② 국내 입국한 콜롬비아 국적 제조책들, 캐나다 국적 판매책 등이 액상 코카인에 원료 물질(염산 등)을 섞어 **고체 코카인 약 61kg을 제조하여 국내 유통하려고 시도**한 사실 등 범행 전말을 밝혀,
- ③ 범행에 참여한 **마약 사범 7명을 기소(구속 6명, 불구속 1명)하고, 해외 도주한 공범 4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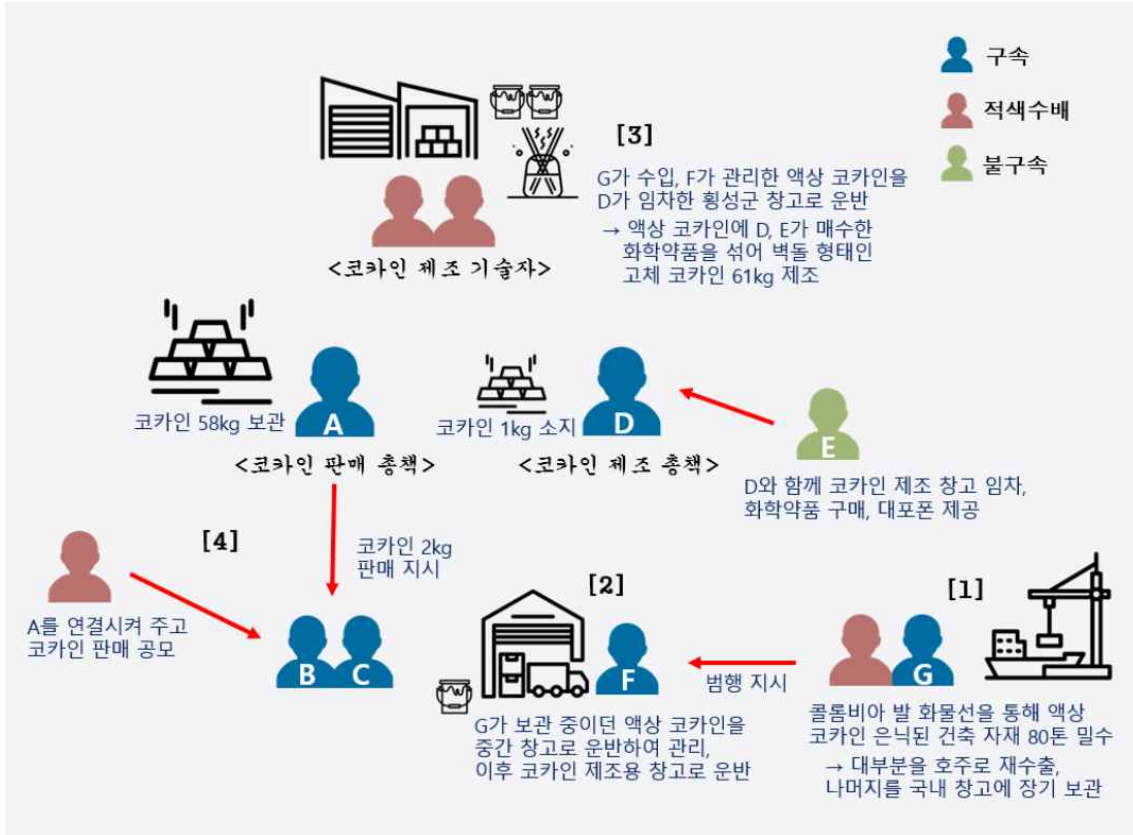
피고인들이 제조하여 유통하려 한 코카인 약 61kg은 소매가 기준 약 300억 원 상당, 1회 투약분 0.05g 기준 122만 명 투약 가능한 양으로, 국내 코카인 범죄 역사상 최대 규모임

●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인천지역 수사실무협의체**(검찰·경찰·세관·해경·해군·국정원)는 앞으로도 마약류 범죄 정보 및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범행 수법 등을 공유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여 마약류 밀수·유통을 차단하고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범행구조도



※ [1]~[4] 표기는 시간 순서임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 총 7명 기소(5명 구속, 1명 별건 구속, 1명 불구속)

※ 죄명 기재 관련 ‘특가법위반’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법위반’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을 의미

순번	피고인	역할	공소사실 요지 및 죄명	처분
1	A (남, 55세, 캐나다 국적)	국내 판매 총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D, 콜롬비아 국적 기술자 등과 공모하여, '24. 6.~7.경 코카인 약 61kg 제조 ▶B, C와 공모하여, '24. 8. 10.경 코카인 약 2kg을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침 ▶'24. 8. 10.경 코카인 약 58kg 보관 [특가법위반(마약)]	'24. 9. 5. 구속 기소, '24. 11. 22. 추가 기소

2	B (남, 27세)	판매책	▶A, C와 공모하여, '24. 8. 10.경 코카인 약 2kg을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침 [특가법위반(마약)]	'24. 9. 5. 구속 기소
3	C (남, 27세)	판매책	▶A, B와 공모하여, '24. 8. 10.경 코카인 약 2kg을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침 [특가법위반(마약)]	'24. 9. 5. 구속 기소
4	D (남, 34세)	국내 제조 총책	▶A, 콜롬비아 국적 기술자 등과 공모하여, '24. 6.~7.경 코카인 약 61kg 제조 ▶E와 공모하여, '24. 7.~9.경 코카인 성분이 함유된 부산물 약 450kg 보관 [특가법위반(마약), 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 ※ 코카인 약 1kg 제공 등 혐의로 '24. 8. 29. 구속 기소(서울중앙지검)되어 1심 재판 중	'24. 11. 22. 추가 기소
5	E (여, 28세)	D의 여자친구, 창고 명의 등 제공	▶A, D 등이 코카인 약 61kg을 제조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 ▶D와 공모하여, '24. 7.~9.경 코카인 성분이 함유된 부산물 약 450kg 보관 [특가법위반(마약)방조, 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	'25. 1. 22. 불구속 기소
6	F (남, 41세)	액상 코카인 보관, 관리	▶A, D 등이 코카인 약 61kg을 제조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 [특가법위반(마약)방조]	'24. 11. 22. 구속 기소
7	G (남, 41세)	액상 코카인 밀수, 보관	▶ '20.7.~'21. 5.경 건축용 벽토를 수입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액상 코카인 불상량이 은닉된 건축 자재 80톤 수입 ▶ '23. 12.경까지 밀수입 액상 코카인 중 일부 (고체 코카인 최소 61kg 제조 가능한 양)를 보관하면서 관리 [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	'24. 12. 20. 구속 기소

2 주요 수사경과

- '24. 8. 9. 서울시경, D 긴급체포 및 코카인 약 1kg 압수
 ※ 코카인 1kg 판매하려다 검거
- '24. 8. 10. 중부지방해경, A, B, C 긴급체포 및 코카인 약 60kg 압수
 ※ 코카인 2kg 판매하려다 검거, 주거지에 58kg 보관

- '24. 8. 10. 서울중앙지검, D 구속 기소
- '24. 9. 5. 인천지검, A, B, C 구속 기소
- '24. 9. 27. 중부지방해경, 코카인 성분 함유 부산물* 약 450kg 압수
* 코카인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액체로 코카인 양성 검출, 구체적인 코카인 함유량은 불상
- '24. 10. 15. 인천지검, A, D의 코카인 제조, F의 제조 방조 입건

중부지방해경 수사 및 인천지검 보완수사를 통해, ① D가 강원 횡성군 소재 창고를 임차한 사실, ② A가 D와 함께 여러 차례 횡성군 창고에 방문한 사실, ③ D가 코카인 제조에 필요한 화학 약품을 구매한 사실 등을 확인

- '24. 11. 15. 인천지검, G의 액상 코카인 밀수 입건

코카인 이동 경로를 역추적한 결과, 콜롬비아에서 건축자재로 위장한 액상 코카인을 밀반입한 경위를 밝히고 F의 인적사항 특정

- '24. 11. 21. 인천지검, F 구속 기소, A, D 불구속(별건 구속) 기소
- '24. 12. 20. 인천지검, G 구속 기소
- '24. 12. 30. 인천지검, E의 코카인 제조 방조 입건

E는 코카인 제조 핵심 공범인 D의 여자친구로, D를 위하여 창고 임차인 명의를 빌려주고 범행용 대포폰을 제공하였으며 D와 함께 코카인 제조에 필요한 화공약품을 매수하였음

- '25. 1. 22. 인천지검, E 불구속 기소

3 수사 결과

▣ 내국인이 연계된 국제 마약 조직의 역대 최대 규모 코카인 제조 및 유통 시도 범행의 전말을 밝힘

- 본건 범행을 주도한 A는 필리핀계 캐나다 국적자로 캐나다 갱단(Gangster) 출신이며, D는 어린 시절 미국에 거주하면서 LA 갱단에서 활동한 자이고, B는 필리핀에 거주하는 甲(적색수배)을 통해 A를 소개받음

- 호주에 수년간 체류한 G는 호주에서 알게 된 乙(적색수배)로부터 범행을 제안받고 국내에서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콜롬비아에서 건축용 벽토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액상 코카인 불상량이 은닉된 화물을 밀수하였음
- 위와 같이 범행하던 중 G가 별건으로 구속 수감되자 乙은 다시 F에게 동일 범행을 제안하였고, F는 창고를 임차한 다음 액상 코카인을 관리하였음
- D는 멕시코 갱단의 지시를 받아 코카인 제조를 준비하는 한편, 국제 마약 밀수 조직이 국내로 불러들인 코카인 제조책 丙, 丁(각 적색수배) 및 국내 판매 총책 A와 접선하고, F가 보관 중이던 액상 코카인을 강원도 횡성군 창고로 운반한 다음 고체 코카인 최소 61kg을 제조하였음

■ 대한민국이 국제 마약 밀수의 중간 거점으로 악용되었음

- G와 공범은 콜롬비아에서 건축용 벽토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산항을 통해 액상 코카인 불상량이 은닉된 화물을 밀수하고, 국내에서 건축 자재를 구입하여 통을 비운 다음 액상 코카인을 옮겨 담아(일명 '통같이 수법') 다시 건축 자재를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호주로 재수출해왔음

2022년 언론보도된 '멕시코로부터 필로폰 약 902kg을 밀수입하여 그 중 약 498kg을 호주로 밀수출'한 사안과 범행 수법*이 매우 유사함

* 멕시코 産 기계 부품에 은닉한 대량의 필로폰을 부산항으로 밀수한 다음 국산 기계 부품에 은닉하여 호주로 재수출

- 국제 마약 조직은 콜롬비아 發 화물에 대한 최종 도착국 세관 단속을 피하고자 대한민국 發 화물로 세탁하였고, G의 국내 유령회사 설립 관련 비용, 창고 및 사무실 임대료, 위장용 국산 건축자재 구입비, 운반비 등을 전액 지원하였음

■ 국제 마약 조직이 국내 유통 목적으로 대량의 코카인을 불법 제조하였음

- 국제 마약 조직은 콜롬비아에서 밀수한 액상 코카인을 모두 호주로 수출해왔으나, 대한민국에서도 코카인 대량 유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국내에서 코카인 완제품을 생산·판매할 계획을 수립하였음

- 이에 내국인인 D를 통하여 인적이 드문 시골에 코카인 제조용 창고를 임차하고 코카인 제조에 필요한 화학약품들을 구입하는 한편, 코카인 제조 기술자들을 콜롬비아에서 대한민국으로 파견하였음
- 콜롬비아 국적 제조책들(丙, 丁은) 액상 코카인에 화학약품들을 혼합, 가열하여 고체 코카인을 대량으로 제조한 다음 A, D에게 인계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를 판매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조기에 검거되어 국내 유통이 차단되었음

- ▶ 코카인 약 61kg은 소매가 기준 약 300억 원 상당, 1회 투약분 0.05g 기준 122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으로, 국내 코카인 유통 범죄 역사상 최대 규모임
- ▶ 전통적으로 국내 암거래 마약류 중 필로폰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클럽마약’인 케타민, 엑스터시와 카트리지 흡연 방식으로 투약하는 합성대마의 유통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서구권·부유층 마약으로 인식되어 왔던 코카인 역시 급증세임
- * 최근 인천시경에서 코카인 약 850g을 보관한 마약 운반책을 검거하는 등 도매급 코카인 유통 정황이 다수 확인됨

- 국내 마약류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국제 마약 조직의 국내 직접 진출이 확인되었는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총체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임

4 향후 계획

- 인천지검은 인터폴 적색 수배한 해외 체류 공범들의 조기 송환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피고인들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음
-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산하 ‘인천지역 수사실무협의체’는
 - 앞으로도 공조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마약 밀수에서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전개하고,
 -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범행 수법 등을 공유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여 마약류 대량 밀수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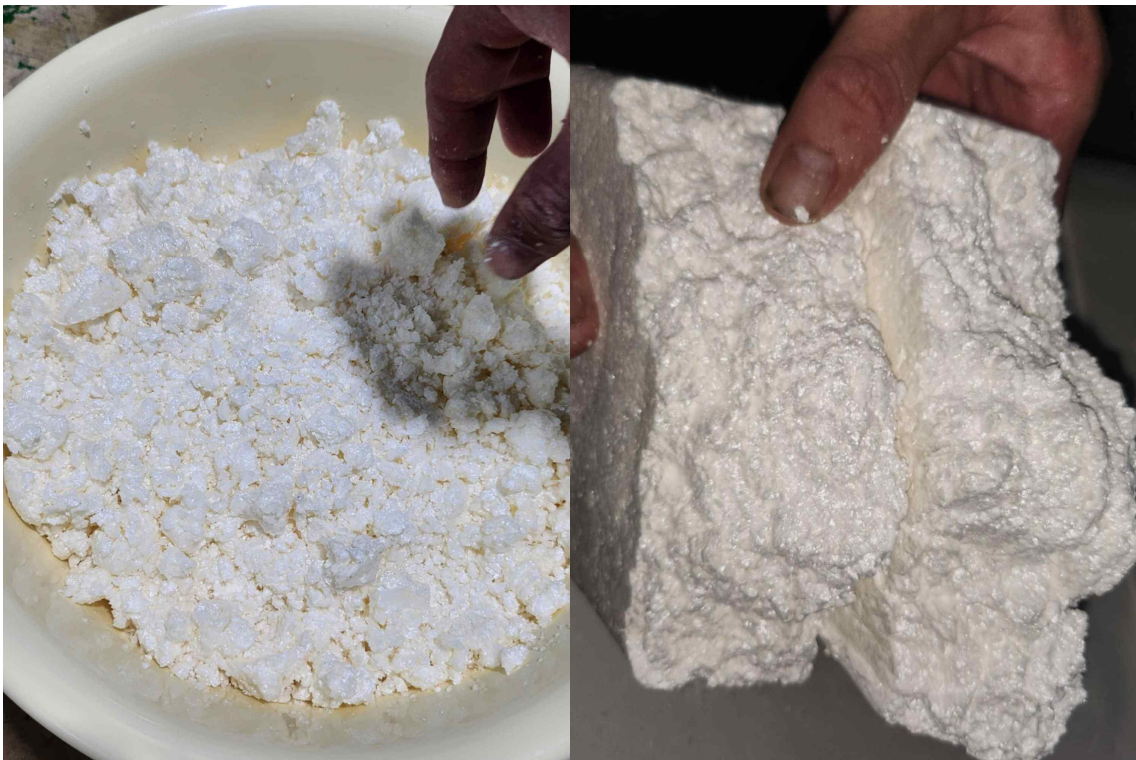
[별첨1]

- 관련 사진 자료 -

<코카인 제조 과정>

- 콜롬비아 국적 제조 기술자들이 강원도 횡성군 소재 창고에서 코카인을 제조하는 과정이 촬영된 사진





<제조를 마친 고체 코카인>

- 개당 약 1kg인 벽돌 형태 고체 코카인(캐나다 갱단인 'UN' 표식이 날인되어 있음)을 대량 제조하였고, A와 D가 이를 건네받아 국내 유통 시도하였음

※ A로부터 코카인 블록 60개, D로부터 코카인 블록 1개 압수



<밀수입 액상 코카인>

- G와 공범이 콜롬비아 産 건축 자재 통에 은닉한 액상 코카인을 수입 하였고 당시 컨테이너 안에 적재된 화물 사진



< 액상 코카인 운반 장면 >

● G와 공범이 보관 중이던 액상 코카인을 D가 임차한 창고로 발송할 당시 장면이 촬영된 사진

※ 좌측에 적재된 콜롬비아 産 건축자재 안에 은닉된 액상 코카인을 우측에 적재된 국산 건축자재 빈 통(흰색 바탕에 노란색 프린트)으로 옮겨 담아 호주로 밀수출하는 수법

